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('23.12.29.)·시행('24.1.1.)되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통지, 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또한,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리·감독, 실태조사, 시정요구 및 그 업무의 일부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위탁하는 세부사항 등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법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통지, 유예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(제53조의2)

나.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 대행기관은 통지에 필요한 전자통지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제53조의3)

다.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관리대장의 기재 사항 및 보관기간 규정 신설(제53조의4)

라.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설치하는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(제53조의5)

마.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이 통지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(제53조의6)

- 바.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리·감독 등에 관한 규정(제53조의7) 및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관리·감독 등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(제65조제2항) 신설
- 사.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,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제65조의2제5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법무부, 대검찰청,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 조문 대비표, 별첨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통신자료제공대장”을 “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신자료제공 현황 보고”를 “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 보고”로, “통신자료제공 현황 통보”를 “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 통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통신자료제공”을 “통신이용자정보제공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통신자료제공대장”을 “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“자료제공요청서”를 각각 “정보제공요청서”로 한다.

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및 유예 절차) ①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.

②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

제53조의3(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) ① 법 제83조의3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은 동업무에 필요한

시스템(이하 “전자통지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수사기관등은 전자통지시스템을 통하여 대항기관에 통지를 하거나 통지 유예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등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때에는, 대항기관이 법 제83조의3에 따라 통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대항기관에 제공하고, 대항기관은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위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한다.

제53조의4(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) ① 대항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자통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.

1. 통지 대상자의 인적사항
2. 통지 일시, 통지 방법 및 통지 내용
3. 통지 요청 수사기관 및 요청자 정보
4. 통지 유예 요청 일시, 유예 기간, 횟수 및 유예 사유

② 대항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직접하는 수사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53조의5(이용자 통신비밀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) ①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(이하 “대항기관 전담기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위법·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업무
 2. 법 제83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 대행 관련 업무
 3.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구비 관련 업무
 4. 법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관련 업무
 5. 그 밖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에 필요한 사항
- ② 대행기관의 전담기구는 해당 대행기관의 본사에 설치하고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둔다.

제53조의6(비용의 지급) ① 수사기관등이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통지업무 대행에 지급하는 비용은 통지 건별로 산정하며, 수사기관등은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통지시스템 구축비(통신사 통지 관련 시스템 구축비 포함), 유지보수비, 운영비 등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통지 건별 통지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제53조의7(대행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 등)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능력, 보안조치, 기술·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수사기관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사기관등에게 제출해야 하며,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.

1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현황
2. 통신이용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·기술적 보안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업무 수행 능력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.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유예 관련 자료

③ 수사기관등이 대행업무의 수행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할 수 있다.

④ 법 제8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⑥ 법 제83조의4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 경우
2.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3.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제65조의 제목 “(권한의 위임)”을 “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직전년도에 제공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건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.

1. 제공 받은 전화번호가 5만건 이하인 경우 : 법 제8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수사기관등의 업무
2. 제공 받은 전화번호가 5만건을 초과하는 경우 : 법 제83조의4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수사기관등의 업무

제65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행기관은 제83조의3에 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3조(통신비밀의 보호)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<u>통신자료제공대장</u> 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	제53조(통신비밀의 보호) ① ----- ----- -- <u>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</u> ---- -----.
②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<u>통신자료제공 현황 보고</u>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<u>통신자료제공 현황 통보</u> 는 매 반기(半期)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	② ----- <u>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 보고</u> ----- ----- <u>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 통보</u> ----- -----.
③ 법 제83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(이하 “전담기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	③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<u>통신자료제공 현황 보고</u>	3. ----- <u>통신이용자정보제공</u> --
4.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<u>통신자료제공대장</u> 기재 내용의 통보	4. ----- <u>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</u> -----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<u>자료제공요청서</u> 의 결재권자는 판사, 검사, 수사관서(군 수사기관,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	⑤ ----- <u>정보제공요청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.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each,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. The first row contains a single lowercase dot at its center, while all other rows are completely blank.

⑥ ----- 정보제

공요청서-----

-----.

-----.

제53조의2(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
지 및 유예 절차) ① 수사기관등은
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
당사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
가 불가한 경우에는 「주민등록

<신 설>

법」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.

②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

제53조의3(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

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) ① 법 제83조의3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은 동업무에 필요한 시스템(이하 “전자통지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수사기관등은 전자통지시스템을 통하여 대행기관에 통지를 하거나 통지 유예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등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때에는, 대행기관이 법 제83조의3에 따라 통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대행기관에 제공하고,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위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53조의4(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) ①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자통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.

1. 통지 대상자의 인적사항
2. 통지 일시, 통지 방법 및 통지 내용
3. 통지 요청 수사기관 및 요청자 정보
4. 통지 유예 요청 일시, 유예 기간, 횟수 및 유예 사유

②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직접하는 수사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53조의5(이용자 통신비밀 전담기구) ①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(이하 “대행기관 전담기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위법·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관

<신 설>

리업무

2. 법 제83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
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
의 통지 대행 관련 업무

3.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
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
자료 구비 관련 업무

4. 법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
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관
련 업무

5. 그 밖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
받은 사실 통지에 필요한 사항

② 대행기관의 전담기구는 해당
대행기관의 본사에 설치하고 임원
급 직원을 책임자로 둔다.

제53조의6(비용의 지급) ① 수사기
관등이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
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기
관의 통지업무 대행에 지급하는
비용은 통지 건별로 산정하며, 수
사기관등은 그 비용을 분할하여
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과 협의
하여 통지시스템 구축비(통신사
통지 관련 시스템 구축비 포함),
유지보수비, 운영비 등 소요비용

<신 설>

을 고려하여 통지 건별 통지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제53조의7(대행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 등)

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의 업무수행능력, 보안조치, 기술·시설 유지여부 등을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수사기관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사기관등에게 제출해야 하며,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.

1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현황

2. 통신이용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·기술적 보안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3. 업무 수행 능력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4.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유예 관련 자료

③ 수사기관등이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할 수 있다.

④ 법 제8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에게 시정을

제65조(권한의 위임) (생략)

<신설>

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⑥ 법 제83조의4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 경우
2.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3.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

제65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직전년도에 제공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건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.

1. 제공 받은 전화번호가 5만건 이

제6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<u>하인 경우 : 법 제8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수사기관등의 업무</u> 2. <u>제공 받은 전화번호가 5만건을 초과하는 경우 : 법제83조의4제1 항제2호 및 제3호의 수사기관등 의 업무</u> 제6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법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행기관 은 제83조의3에 규정된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663